

『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 및 구체화 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표준조례안 반영 및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정비
- 상위법 근거 법령 변경(안 제1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→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(안 제3조)
-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(안 제6조)
-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(안 제7조, 안 제8조)
-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9조 ~ 안 제19조)
 - 위원회 명칭 변경 :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-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제한 등(안 제22조 ~ 제24조)
-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는 (간접)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관련 반영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, 제재부과금·가산금 부과 제도 도입, 수급자격 검증·관리시스템 도입, 3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외부검증 등 지방보조금 관리·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부정수급 예방,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